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교육감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9월 2일

교육사회위원회
전문위원 권태환

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-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지난 2005년도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시행하였지만 타시·도에 비해 높게 징수하고 있어 이에 형평에 맞게 인하하고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와 현금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결제 납부방식과 병행하는 사항이며
-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을 과오납 또는 응시자가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에 응시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행 50,000원에서 25,000원으로 인하고 실기부과 과목 응시수수료를 현행 20,000원에서 10,000원으로 인하
-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, 현금 또는 전자결제 납부방법과 병행
-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에 응시원서 접수취소자의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도 대폭적으로 응시수수료를 인상한후 타시·도에 비해 수수료가 현저히 높아 그동안 응시생들의 민원 제기로 이번 타시·도와 형평을 맞게 인하함으로써 응시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
- 응시수수료 납부방법도 현 시대에 맞게 인터넷을 통한 전자 결제 납부방식과 병행하고 응시자가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에 응시원서 제출을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사료됨.
- 그러나 4여년 동안 응시생들에게 가중한 수수료 부담을 준 것은 업무추진상 치밀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.